

당진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 공고

2022. 02. 09.



당진시산림조합장



당진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있어야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제64조제1항제13호)

당진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

당진시산림조합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13.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300)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300)만원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

제64조제1항13호

현 재	개 정
-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 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 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 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1만원 이상	-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 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 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 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삭제 나.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 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 균잔액 : (300)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 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 균잔액 : (300)만원 이상

- ※ 제13호의 각 목 중 조합의 실정에 따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나만을 선택할 때에는 제13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음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 제13호 각 목의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예금·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